

보도 일시	2023.1.3.(화) 국무회의 시작 시(석간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 2.(월) 오후
담당 부서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원 (044-200-5510)
		담당자	사무관 김도한 (044-200-5518)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시행 -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3일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2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법」 전부개정('22.1.11개정, '23.1.12시행)을 통하여 신설된 어구관리 제도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① 어구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폐어구나 유실어구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근해 자망어업, 통발어업, 안강망어업 등 7개 업종으로 규정하고,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소유자 부담률을 정하여 어업인 스스로 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관청은 폐어구 수매 및 재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개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은 기존 수산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20.5~)해 왔으나, 이번 시행되는 「수산업법」에 시범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시행령에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조업실적의 보고, 어선 안전 및 조업 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및 조업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

이 외에도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조정을 위하여 어구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정하여 지자체 연안자원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어구 관리를 위한 의무사항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어구 관리제도의 세부 운영방안과 절차의 이행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어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어업관리의 방식을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 어구관리 강화, TAC 중심 어업관리 등을 반영한 수산업법 전부개정*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

* 공포일('22.1.11.), 시행일('23.1.12. 다만, 어구보증금제도는 '24.1.12부터 시행)

- 어구관리 제도의 이행과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 부처협의('22.7.22.~8.1.), 입법예고(7.25.~9.3.), 법제처심사(12.28)

□ 주요 내용

- 어구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46~49조)

- (어구실명제*) 적용 대상을 연근해어업 7개 업종**으로 함(안 제46조)

* 부령(어업허가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상 근거 마련('22.1)

** 정치(定置)형 어업인 연근해 자망·통발·안강망, 실뱀장어 안강망

- (어구수거 해역 지정) 대상 해역 및 기간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어구수거 명령 시 고지 내용 규정(안 제47조)

- (소유자 부담)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소유자 부담률을 100%^(폐어구), 50%^(유실)로 정함(안 제48조)

- (사업 지원) 폐어구 구매 및 재활용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개인·단체에 경비 지원(안 제49조)

-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안 제50~51조)

-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①TAC준수, ②조업실적의 보고, ③조업 감시 시스템 구비 등 규제완화 사업 참여 요건을 정함(안 제50조)

- 어구 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 자율 규제 시 이행 의무 사항(안 제51조)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정함

□ 추진배경

- “수산혁신 2030 계획”(19.2)에 따라 어구·어법 등 전통적인 Input control을 총허용어획량 등 Output control로 전환 도모
- Output control로 전환 추진을 위해 엄격한 TAC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 추진
 - * (필수조건) ①전체 어획량 TAC 관리, ②위성 기반 어선위치발신장치(INMARSAT) 장착, ③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 (선택조건) ①CCTV 설치, ②자발적 수산자원보호조치 강구

□ 추진근거

수산업법(23.1.12. 시행)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1. 제40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사항
	2.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
	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8.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 및 그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추진현황(20.5.1.부터 시행 중)

단 체 명	업종	규제완화사항
경인북부수협	연안개량안강망	· 세목망 3개월(9~11월) 사용 허용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근해안강망	· ①어류분류망 변형, ②중간세목망 사용 허용
여수잡수기공동체	잡수기	· 바지락 채취기(일명 "흡입기") 사용 허용
근해소형선망협회	소형선망	· ①부속선 규모 증톤(10톤 미만 → 20톤 미만), ②부속선 용도 변경(등선1, 운반선1 → 부속선 2척)
여수트롤협회	대형트롤	· 금지체장 33cm 이하의 민어 혼획률 10% 허용
근해형망협회	근해형망	· ①자루그물 하부 이격, ②체인개수 확대 등